

새로운전북 특별한기회

2025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도비지원 사업안내**

전북특별자치도



# 목 차

1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1
①	마을학당 운영	6
②	행복플러스사업	10
③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13
④	국적취득 멘토단 운영 사업	15
2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18
①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18
②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지원	24
3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25
4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29
5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31



# 1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비 : 1,621,835천원 (도비 486,551<sup>30%</sup>, 시군비 1,138,284<sup>70%</sup>)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도민 등
- 사업내용 : 마을학당 운영, 행복플러스 사업, 다문화어울리문화지원, 국적취득 멘토단 운영 등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 □ 추진체계

기관명	기관별 역할
도	① 지침 마련 ② 사업비 지원(총사업비의 30%) ③ 사업평가 및 환류
시·군	① 사업 홍보 ②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발굴 및 센터 연계 ③ 사업계획 검토 및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④ 사업비 지원(총사업비의 70%) ⑤ 보조사업 지도 및 사업 결과보고
가족센터 (운영주체)	① 사업계획 수립 ② 사업홍보 및 참가자 모집 ③ 보조사업 수행 ④ 만족도 조사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 □ 세부 운영계획

### ■ 기본사업(필수사업)

- 마을학당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 마을학당, 맞춤형 한국어 집합교육, 안전교육
- 행복플러스 사업
  - 가족(부부·부모자녀),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국적취득 멘토단 운영 사업
  -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게 입국초기부터 국적취득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멘토단 운영

### ■ 선택사업(센터별 맞춤형 사업 실시)

- 가족캠프, 아버지교육, 나눔봉사, 자조모임, 부모·자녀·부부 상담, 부모역량강화교육 등
- 문화재능기부 나눔봉사단 운영
- 학부모통역서비스 지원, 다문화이해 및 이중언어 학당 운영
-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화 맞춤형 사업 추진

##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① 『2025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사업비 집행기준 준용
  - 단,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준초과 지출이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하고 지출 가능
  - 센터 기본운영 예산편성(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준에 의거 편성
    - ※ 업무추진비, 시설비 편성불가, 수행단체 소속직원 강사 활용 시 강사료 지급 불가
    - ※ 출장비는 운영프로그램 지원 센터직원 모두 지급 가능
- ② 글로벌마을학당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팀장급 본봉, 호봉제 적용
  - 글로벌마을학당 운영예산에서 마을학당팀장과 도비종사자의 수당은 센터운영(국비)종사자 기준으로 지급 가능
  - 글로벌마을학당 팀장은 센터 총괄팀장(사무국장)직과 겸임 불가
- ③ 글로벌마을학당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여비, 수용비, 공공요금)는 총사업비(인건비 포함)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 공공요금은 사업의 운영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편성불가)
- ④ 글로벌마을학당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센터별 특성에 맞춰 4개(마을학당+다문화어울림문화교육지원+행복플러스+국적취득멘토단) 사업간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며 선택사업은 자율적 추진
  - 단, 기본사업의 기본 사업량은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사업은 1개 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계획, 사업정산 등 1개 사업으로 추진(단, 통합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
- ⑤ 사업비의 100만원 이하 사업내용 변경 시(동일 관내의 향간 전용시) 기관 내부방침으로 결정(시군 센터는 사업내용 변경 후 시군 보고)
- ⑥ 학부모통역서비스 실비지급 가능
- ⑦ 행복플러스사업,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의 경우, 외부행사 시 부득이한 경우 식비 10천원까지 편성 가능

## □ 시군별 글로벌마을학당 사업예산 기준액

※ '25년도 사업비는 기본사업(사업량)은 충족되어야 하며,  
4개 사업의 예산은 사업간 자율조정하여 추진가능  
(단,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5%, 공공요금은 운영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천원)

시군명	글로벌 마을학당 예산액			상한액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운영비	공공요금
합 계	1,621,835	486,551	1,135,284	81,092	24,328
전 주 시	146,835	44,051	102,784	7,342	2,203
군 산 시	130,000	39,000	91,000	6,500	1,950
익 산 시	130,000	39,000	91,000	6,500	1,950
정 읍 시	125,000	37,500	87,500	6,250	1,875
남 원 시	125,000	37,500	87,500	6,250	1,875
김 제 시	125,000	37,500	87,500	6,250	1,875
완 주 군	125,000	37,500	87,500	6,250	1,875
진 안 군	99,000	29,700	69,300	4,950	1,485
무 주 군	99,000	29,700	69,300	4,950	1,485
장 수 군	99,000	29,700	69,300	4,950	1,485
임 실 군	99,000	29,700	69,300	4,950	1,485
순 창 군	99,000	29,700	69,300	4,950	1,485
고 창 군	110,000	33,000	77,000	5,500	1,650
부 안 군	110,000	33,000	77,000	5,500	1,650

# □ 글로벌마을학당 사업비 사용계획서

(단위 : 천원)

		과 목		금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세목												
계		사 업 비													
사 업 비	글로벌마을학당	합	계												
		인	건	비	급	여	<b>『2025년 가족사업안내(여가부)』 팀장급</b> <b>보수로 호봉제 적용</b> <b>※ 팀장호봉기재 ex) 마을학당 팀장: 팀장 5호봉</b> (글로벌마을학당 운영예산에서 마을학당팀장과 도비종사자의 수당은 센터운영(국비)종사자 기준으로 지급가능)								
					4 대 보 험 등										
		운	영	비	여	비	<b>총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b> <b>※ 단, 공공요금은 운영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b>								
					수 용 비 및 수 수 료										
					공 공 요 금										
		마	을	학	당	사	업	비							
		행	복	플	러	스	사	업	비						
		다	문	화	어	울	림	문	화	지	원	사	업	비	
		국	적	취	득	멘	토	단	영	운	사	업	비		

## ① 마을학당 운영

민간부문의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여 각종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참여율 제고(결혼이민자의 학업능력,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구축(한국어교육과 다양한 생활 밀착형 교육서비스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및 도민
- 사업내용 : 찾아가는 한국어 마을학당 운영, 맞춤형 한국어 집합 교육, 안전교육, 자조모임 등

#### ■ 기본사업(필수사업)

- 찾아가는 한국어 마을학당 운영
  - 결혼이민자, 자녀, 외국인주민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당 운영
- 맞춤형 한국어 집합교육
  - 연령별, 직종별, 단계별 등 맞춤형 한국어 교육
- 안전교육
  - 긴급상황 대처법 등 교육(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등)

#### ■ 선택사업(센터별 맞춤형 사업 실시)

- 다문화이해학당 운영
- 나눔봉사, 자조모임, 상담 등 ※ 한국인 참여 통합국적 자조모임
-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화 맞춤형 사업 추진
- 이중언어학당 운영

## □ 세부 운영계획

-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의 한국어교육 및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통합 서비스 제공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한국어 교육 운영
- 지역사회 물적 자원과 교육, 재능기부 등 사회활동이 가능한 인적자원을 활용
- 가족센터장의 총괄책임 하에 센터 내 팀제로 운영
  - ※ 마을학당 인력 배치 및 업무조정은 지역 센터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 □ 마을학당 팀장(담당자) 임용 및 자격요건

### 《임용방법》

-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
  - 센터·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채용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센터 인사위원회 구성
  - 직원 채용시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하며 선발·심사표를 작성
  -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교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외부위원(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 제외)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 공개경쟁채용 예외
  - 예외적으로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직원 보직변경, 센터 기본인력과 별도사업 전담인력간 보직변경 시 센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후, 인사 발령 가능
    - ※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 제외) 1인 이상 반드시 확보
    - ※ 센터 기본인력과 별도사업 인력 간 보직변경 시 종사자 처우가 하향된 조건으로 보직변경 할 수 없음

## 《자격요건》 「2025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팀장급 채용기준

- 관련사업 1년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3년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사업 5년이상 근무경력자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교육, 가족상담,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 \* 타 지역 가족센터 근무경력 인정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가능

## 《임금 및 복무기준》

※ 월단위 중간 변동 시 일할 계산 지급

- 인 건 비 : 「2025년 가족사업안내」 팀장급 보수로 호봉제 적용  
(본인 및 기관부담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 복무기준 : 「2025년 가족사업안내」 복무기준에 준함
  - ※ 글로벌 마을학당 팀장은 센터 총괄팀장(사무국장)직과 겸임불가

## 《담당업무》

- 글로벌 마을학당 프로그램 총괄 기획
- 마을학당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한국어 교육 운영
- 다문화가족 통합집중관리 서비스(일반형, 집중형)
- 개인별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지역복지 자원 연계
-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 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 마을학당 교사(자원봉사자) 자격요건 및 역할 《모집 및 선정방법》

- 시군구 또는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역량을 갖춘 자에 대해 센터장이 선정
  - ※ 선정기준 : 유사활동 경력, 자질, 전문성,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속 여부 등

## 《자격요건》

-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전직 교사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이민자 한국어교육 60시간 이상 경력자
- 교육학, 보육학, 아동복지학, 유아교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원, 건강가정사 등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결혼이민자에 한함)
  - ※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장이 활동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 자원봉사자 연 2회 보수교육 실시(개별적,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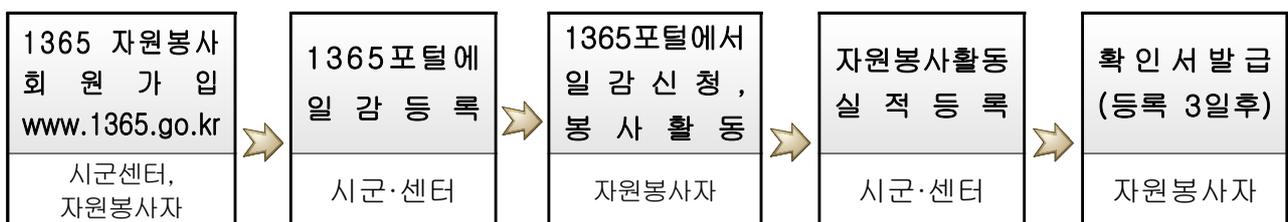
## 《실비 지급기준》

- 글로벌 마을학당 교사(자원봉사자) 실비 : 1회당 25,000원 지급
  - ※ 결혼이민자와 마을학당 교사(자원봉사자)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최대한 단거리 지역 연계, 실비(1회기당 25,000원 이하) 지급 가능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교통비 기준을 준용하여 교통비 지급 가능

## 《자원봉사자 역할》

- 찾아가는 한국어학당 지도
  - 그룹교육(대상자 2명이상 지도), 1:1 한국어교육
- 찾아가는 가족생활 지도(부모교육, 자녀교육) 등
- 기타 센터가 요청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도
- 대상자 파악 및 초기상담 서비스

##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 1365 통합포털 사용안내 (고객센터 1522-3658)

## ② 행복플러스사업

서로 다른 언어·문화 차이로 다문화가족이 겪게 되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갈등 해소를 위해 가족 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정보제공 및 학부모 역할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 (선택사업)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도민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지원, 부모 역할 지원 등
  - (기본사업) 가족(부부·부모자녀),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 (선택사업) 가족캠프, 자조모임, 전문상담프로그램 등

#### ■ 기본사업(필수사업)

- 가족(부부·부모자녀),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 생애주기별(임신, 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등) 부모 교육

#### ■ 선택사업(센터별 맞춤형 사업 실시)

- 가족캠프, 나눔봉사, 자조모임, 전문상담프로그램(부모·자녀·부부 상담 등), 학부모통역서비스 등

### □ 세부 운영계획

- 대상자모집
  -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 SNS, 인터넷 활용 홍보 및 개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
  - 참가희망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필수)

## ○ 참가자 관리

-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설문지를 제출한 참가자에 한해 사업추진 실적 인정(자녀는 설문 제외)
- 프로그램 종료 후 국가별 자조모임 결성 등 지원

## ○ 운영형태 : 교육, 가족캠프, 워크숍, 전문상담, 체험 및 사례관리 등

-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구성현황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운영
- 2025년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국가(여성가족부) 사업과는 분리하여 운영하고 사업실적 별도 관리
- 다문화가족 갈등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내용 포함 운영
- 학부모 교육, 다문화가족 부모 역량강화 및 부모자녀 관계향상 등 운영

## ○ 교육교재 확보

- 교육강사 원고 활용 또는 자체 교재 제작·보급, 여성가족부 보급 교재 활용 등
- 학부모 교육 시 활용 자료
- ※ 인터넷 포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꿈 교육지원센터 검색 및 접속  
⇒ 자료실 활용(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교육 이해자료 등)

## □ 사업비 집행기준 등

### ○ 지원내용

- 강사료, 원고료, 사례 발표비, 전문상담위원 상담료, 아이돌보미 비용, 교육 참가자를 위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기타 사업진행비
- ※ 가족 및 부부교육 참여 시 아이를 동반한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가능(강사료, 운영비)

○ 집행기준

- 「2025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사업비 집행기준 준용
  - 단,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준초과 지출이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하고 지출 가능
- ※ 수행단체 소속직원 강사 활용 시 강사료 지급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가족 학부모 역량강화 목적 외 불필요한 교육 금지
- 결혼이민자 외 아버지, 조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건강한 자녀성장환경 조성
- 사교육 경쟁을 초래하는 학습지 후원금품 협찬 금지
- 동절기 교육시 교육장소의 각종 편의시설 제공
  - 난방, 동반 아동 별도 보호공간 확보, 오지·벽지에 한해 수송 대책 마련

### ③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다문화가족과 도민에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소통하고 융합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도민 등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합창, 댄스, 악기, 음악줄넘기, 태권도, 드론축구단 등)

##### ■ 기본사업(필수사업)

- 다문화어울림 문화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

##### ■ 선택사업

- 문화재능 봉사단 운영, 센터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 □ 세부 운영계획

- 운영규모 : 센터당 1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센터별 예산조정가능)
- 참여인원 : 프로그램별 연간 실인원 10명~30명 이상
- 운영방법 :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게 총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단, 프로그램별 1주 1차시(최대 3시간), 최소 10회기 이상 운영
- 운영범위 :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문화 지원사업 범주 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운영형태 :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참여 비율 고려)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외국인주민과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분야선정 및 프로그램 기획,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설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내실화 도모
- 사업목적 및 사업방향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센터 담당자, 강사진 등 프로그램 운영 주체 및 교육담당자 워크숍 추진 (프로그램 추진 중간 점검, 의견수렴, 발표회 등)
-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운영하되,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과 도민 참여비율(7:3)을 고려하여 구성(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참여비율 조정 가능)

※ 필요시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활용

○ 강사진 구성 및 역할

- 구성규모 : 지역의 인적자원과 연계한 강사진 구성  
(주강사, 기획자, 보조강사 등 프로그램별 3~4명 이내)
- 주요업무 : 강사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구 분	구성인원	주 요 업 무	비 고
기 획 자	1명	교육프로그램 목표 및 방향 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 총괄	센터담당자
주 강 사	1명	교육활동 진행 및 교육일지 작성 등 프로그램 운영 총괄	
보조강사	2명 이내	교육활동 진행,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역할 (동영상·사진촬영, 프로그램 참여자의 변화내용 등 기록)	

※ 프로그램별 성격에 따라 적정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 ④ 국적취득 멘토단 운영사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도민 등
- 사업내용 :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게 입국 초기부터 국적취득 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멘토단 운영
- 멘토 및 멘티: 멘토 1명당 멘티 3명 매칭
  - (멘토) 대한민국 입국 5년 경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멘티)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
- 멘토링 활동
  - 멘토 활동비(대면) : 회당 25,000원
  - 연 20회 대면활동 필수
  - ※ 멘토링 활동 후 멘토링 활동 일지 작성(붙임 서식 활용)

### □ 세부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5. 1. ~ 12. ※ 합동교육(3월) 및 우수사례 발표회(12월) 추진예정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도민 등
- 운영규모 : 멘토 80명, 멘티 240명
  - ※ 결원(탈퇴, 장기 불참, 국적취득 등) 발생인원은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
- 운영방법 : 대면활동, 전화 및 영상(zoom) 자조활동 병행

구분		2023년(시범)	2024년(확대)	2025년(정비)
지원 내용		국적취득지원	생애주기별 정착지원 국적취득, 정보제공, 한국문화체험, 자녀양육	생애주기별 정착지원 국적취득, 정보제공, 한국문화체험, 자녀양육 ※ 귀화 요건 충족 멘티 2025년 귀화 신청 독려
	추진 방법	1:1매칭	1:3매칭	1:3매칭
대상 인원	멘토	40명	80명	80명
	멘티	40명	240명	240명
		국적미취득자	국적미취득·초기입국자	국적미취득·초기입국자

□ 시군별 결혼이민자 멘토단 운영 인원

시군	멘토	멘티	합계
<b>합계</b>	<b>80</b>	<b>240</b>	<b>320</b>
전주시	12	36	48
군산시	10	30	40
익산시	10	30	40
정읍시	7	21	28
남원시	7	21	28
김제시	6	18	24
완주군	7	21	28
진안군	3	9	12
무주군	3	9	12
장수군	3	9	12
임실군	3	9	12
순창군	3	9	12
고창군	3	9	12
부안군	3	9	12

## 서식 멘토링 활동 일지

일시			장소	
활동 방법	대면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input type="checkbox"/>	회차	
참석자	이름	모국	거주지역	
멘토				
멘티				
멘토링 내용				
사진 자료				

위와 같이 멘토링 활동 일지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멘토                      (인)

## ②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 (②-1. 결혼이민자 학력 지원)

학력 등 자격조건 미달로 단순노동, 기피업종 취업 등을 반복하며 사회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한 검정고시 취득과정 등 운영 및 대학 학비 지원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량 : 123명(학력취득지원 80, 대학 학비 지원 40)
- 사업비 : 244,370천원 (도비 73,311, 시군비 171,059)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 도내 대학 재학 결혼이민자 학비 지원
- 시행주체 : 14개 시군 (가족센터)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 【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과정별 총 800시간 이상)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등
- 사업비 : 113,500천원 (도비 34,545, 시군비 79,450)
- 수행기관 : 14개 시군 (가족센터)

## □ 추진방법

### 1. 추진체제

<b>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마련</li> <li>○ 사업비 지원(총사업비의 30%)</li> <li>○ 보조사업 지도</li> <li>○ 사업평가 및 환류</li> </ul>
<b>시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홍보</li> <li>○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발굴 및 센터연계</li> <li>○ 사업계획 검토 및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li> <li>○ 사업비 지원(총사업비의 70%)</li> <li>○ 보조사업 지도 및 사업결과보고</li> </ul>
<b>가족센터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li> <li>○ 사업홍보 및 참가자 모집</li> <li>○ 보조사업 수행</li> <li>○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li> </ul>

### 2. 사업운영

- 대상자 모집
  - 시·군(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 인터넷 활용 홍보 및 개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
  - 참가희망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필수)
- 운영과정 : 3개 과정 26개반(초졸반 9, 중졸반 8, 고졸반 9)
- 운영기간 : 2025. 1 ~ 12월(센터 자율적 운영)
- 예산지원 : 강사료, 교육교재, 기타운영비
  - 강 사 료 : 시간당 25,000원
  - 교육교재비(실비), 교통비(실비), 기타운영비(1개 시군당 1,100천원)
  - ※ 교통비(실비)지급은 결혼이민자 해당, 강사에게 교통비 지급 불가

- 강사자격요건
  - 해당과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최우선
  - 6개월 이상 학원 강사 경력 확인 가능한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학력 소지한 자
- 운영방법 : 시군 실정에 맞게 택일
  - ① 센터 내 검정고시반에 해당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 ② 검정고시 전문학원에 결혼이민자반을 개설하여 연계 운영
  - ③ 학원접근이 어려운 지역일 경우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단체에 연계 운영
- 예산집행
  - ① 전문학원 연계의 경우 교육생 1인당 해당 수강료를 전문학원에 지급하되 월 출석률 80%이상이어야 함

#### 【전문학원】

- 매 수업일마다 개인별 출석부를 체크하고 익월 5일까지 수강생 개인별 출석상황을 가족센터에 통지한 후 수강료 청구

#### 【센터】

- 수강생 출석상황 점검 후 예산집행, 결석사유 분석 및 참여 권고, 3개월 연속 출석률 80%이하일 경우 해당자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 ② 일반 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육생 1인당 해당 수업료 등을 일정에 따라 학교에 지급함
- ③ 센터 내 검정고시반 개설 운영할 경우 매월 과목별 시간당 강사료 합계금액을 해당 강사에게 지급

## 【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 】

###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고졸 이하 학력으로 전문직 진출과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대학 학사 취득의 필요성 증대
- 배움을 열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 필요
- 결혼이민자 학비지원으로 꾸준한 학습동기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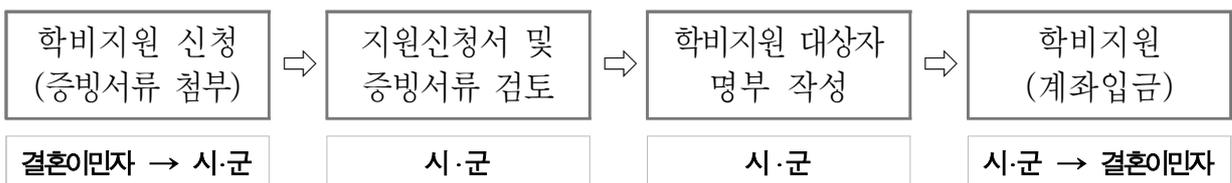
###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인 1백만원 이내(연간) / 학기당 50만원 이내
- 지원시기 : 2회 (3월, 9월)
- 사 업 비 : 28,500천원(도비 8,550, 시군비 19,950)
- 지원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 ⇨ 결혼이민자
- 지원대상 :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결혼이민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한 혼인귀화자
  - '25. 1. 1.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대학 등록금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 사업내용

- 대학 학비 등록금 지원

#### • 지원절차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입학·재학 결혼이민자**

- 사이버대학은 지역제한 없음(한국방송통신대학 포함)
- 평생교육원 제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한 혼인귀화자
- '25. 1. 1.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대학등록금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대학학비 지원은 일반대학(4년제) 기준으로 대학졸업까지 지원 가능

단, ① 일반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타 일반대학 입학 시 지원 불가

② 전문대학 졸업 후 일반대학 편입 또는 입학 시 추가 지원 가능

\*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4년제 대학은 일반대학으로 간주

• **지 원 액 (연간)**

- 일반대학 : 본인이 납부한 대학 입학금·등록금 연간 100만원 (학기당 50만원) 이내 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 본인이 납부한 입학금·등록금 연간 50만원(학기당 25만원) 이내 지원

• **증빙서류**

- 학비지원신청서,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재학 증명서, 통장사본

※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5년 각 시·군으로 학비 지급 전 제출

• **지원시기**

- 결혼이민자가 입학·재학 중인 대학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학비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한 이후로 하되 연 2회 지급(단, 한 학기만 재학시 학기당 기준 1회 지급)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 업무추진 체계 및 절차

기관명	기관별 역할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li> <li>② 예산수요 파악 관련예산 확보</li> <li>③ 사업비 지원</li> </ul>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홍보 및 지원신청서 접수</li> <li>② 대학재학 사실 확인 후 학비 지급</li> <li>③ 학비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재학여부, 학위취득 현황 등)</li> </ul>
가족센터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홍보 및 학비지원 대상자 안내</li> <li>② 학비지원 대상자 사후관리</li> </ul>

※ 단 다문화사업 중 대학 학비 지원, 직업훈련 교육, 고향나들이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2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 (2)-2.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 '24년도 추진방향

-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 결혼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자격증취득과정 중점 운영, 기초소양교육 실시 등
- 취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의 전문가와 연계협력 강화**
  - 새일센터의 취업설계사 초빙 취업상담 등 적극 활용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거점센터 합동교육 추진
  - 이중언어양성과정  
(양성과정) 1인 교육과정비 50만원, 교통비지원 불가  
(보수과정) 1인 교육과정비 20만원, 교통비지원 불가
  - 가정폭력상담원교육 : 1인 교육과정비 80만원, 교통비지원 불가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 취업희망자
- 사업비 : 102,370천원 (도비 30,711, 시군비 71,659)
- 시행주체 : 10개 시군(가족센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제외
- 주요내용 : 도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172명)

#### □ 추진일정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과정 확정 : '25. 1~ 2월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운영 및 취업지원 : '25. 2~12월
- 유관기관(새일센터, 고용센터)의 연계교육 및 취업지원 : '25. 2~12월

### 3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

---

#### □ 추진방향

- 고향나들이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경제적 약자 우대
- 고향나들이 지원 대상자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비 : 236,250천원 (도비 70,875, 시군비 165,375)
- 지원규모 : 56가정(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 시부모)  
※ 나라별 항공료 금액 차이, 방문가족 수에 따라 지원규모 가정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해당시군 2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지원내용 : 1가정당 5,000천원 이내 지원  
-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지원  
(단, 자녀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시기 : 본인이 모국방문을 원하는 시기로 체류기간 7~30일 이내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 □ 추진체계

기관명	기관별 역할
도	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계획 수립 ② 사업 홍보 및 행정·재정적 지원 ③ 사업 운영상황 점검 및 지도 ④ 고향나들이 사업운영 평가
시·군	① 사업 홍보 및 행정·재정적 지원 ② 고향나들이 사업공고 ③ 고향나들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심사·선정 ④ 고향나들이 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 ⑤ 고향나들이 사업운영 평가

### <흐름도>



## □ 추진일정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제출 : '25. 1월
- 고향나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 : '25. 상반기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추진 : '25. 1 ~ 12월

## □ 2025년 사업비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지원가정수)

구분	합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사업비	236.2	51.4	29.4	29.4	16.8	16.8	16.8	16.8	8.4	8.4	8.4	8.4	8.4	8.4	8.4
도 비	70.9	15.4	8.8	8.8	5.1	5.1	5.1	5.1	2.5	2.5	2.5	2.5	2.5	2.5	2.5
시군비	165.3	36.0	20.6	20.6	11.7	11.7	11.7	11.7	5.9	5.9	5.9	5.9	5.9	5.9	5.9
계획	56	12	7	7	4	4	4	4	2	2	2	2	2	2	2

\* 나라별 항공료 금액 차이, 방문가족 수에 따라 지원 가정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 세부 실행계획 】

### ①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대상*	· 2년 이상 해당시군 거주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만 해당
지원자격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이 없는 가정
체류기간	· 7~30일 이내
재원분담	· 도, 시군 재원 30:70으로 분담
인원배정	· 시군별 결혼이민자 수
우대조건	· 본 사업의 지원을 5년 이내 받지 않은 가정 우선 지원

### □ 지원대상 가족구성체 : 1가정당(5,000천원 이내)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시부모

※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반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증빙서류 제출 검토

※ 결혼이민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 구성가족 지원 대상 포함 ⇒ 증빙서류 제출

## ② 모국방문 대상자 선정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 심사위원회 구성

- 설치주체 : 각 시·군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5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3명이상 반드시 확보
  - 내부위원 : 부단체장, 관련업무 과장 등 시군 실정에 맞게 구성
  - 외부위원 : 가족센터장,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역할 : 고향나들이 방문 대상자 선발
- 심사방법 : 기본조건+우대조건 평가기준 항목 심사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선발 평가 심사 표준안

- 기본 + 우대 심사기준

구 분	지원기준	비 고
기본 조건	1. 해당시군 2년 이상 거주자 2.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자부담 및 타 기관 모국방문지원 사업 등의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가정 포함)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법률상 혼인관계만 해당	※ 기본조건은 <u>모두 충족</u> 하여야 함
우대 조건	○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우선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 거주(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 자녀가 많은 가정 ○ 가족센터 프로그램 적극 참여 가정	※ 심사위원회 평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단, 현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중 조례에 대상자 선발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중인 시군은 기 운영형태로 대체 가능

\* 심사기준은 해당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4 가족사업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 가족센터 인력 지원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 사업의 전문성 제고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량 : 14개소(인건비, 복지수당, 명절수당)
- 사업비 : 1,223,892천원(도 367,168 시군 856,724)
- 사업내용
  - 가족센터 인건비(센터별 1명)
  - 종사자 복지수당(5년 미만 120천원, 5년 이상 150천원)
  - 종사자 명절수당(400천원, 연2회)
- 시행주체 : 14개 시군(가족센터)
- 지원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 【 가족센터 도비종사자 인건비 】

- 사업비 : 533,952천원 (도 160,186, 시군비 373,766)
  - 지원내용 : 센터별 팀원급 1명 도비지원 인력 인건비
  - 자격기준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군이 직영하는 경우 7급 이하 공무원 가능
- \* 『2025년 가족사업안내(여가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집행기준

- 종사자 인건비 및 4대보험, 복지수당, 명절수당 등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편성 한 범위 내에서 지급

**【 가족센터(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

○ 지원대상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상담소 상근종사자\*로 하되 일부 사업 수행인력 제외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인력,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상담사, 사례관리사),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전담인력), 다문화특화사업(언어발달지도사, 이중언어강사, 통번역사, 전북거점센터), 기타 가족사업 담당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통번역사), 이주여성쉼터 및 상담소, 도비인력(마을학당팀장, 도비지원), 시군비종사자

\* 직영센터직원 제외

○ 지원기준

- 당해시설 계속 근무 5년 이상 : 월 150천원
- 당해시설 계속 근무 5년 미만 : 월 120천원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기준 준용

**【 가족센터(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상담소 상근종사자\*로 하되 일부 사업 수행인력 제외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인력,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상담사, 사례관리사),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전담인력), 다문화특화사업(언어발달지도사, 이중언어강사, 통번역사, 전북거점센터), 기타 가족사업 담당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통번역사), 이주여성쉼터 및 상담소, 도비인력(마을학당팀장, 도비지원), 시군비종사자

\* 직영센터직원 제외

○ 지원기준 : 400천원 × 2회 (1명기준)

○ 집행기준 : 도비 명절수당은 설과 추석(연2회)명절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이 정해서 40만원씩 지급함

\* 명절수당은 봉급액의 60%를 설과 추석(연2회)에 국·도비, 시군비포함 총 120%이내로 지급할 수 있음

## 5]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에게 통합적인 상담·교육·체류허가·고용허가 등의 서비스지원 시 필요한 통역사 배치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질적 제고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전주시·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 사업비 : 240,000천원 (도 72,000, 시군 168,000)
- 사업내용
  - 체류관리, 고용허가, 통·번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주민 통합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원스톱 통·번역서비스 실시
- 시행주체 : 전주시, 익산시(가족센터)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통역사 인건비 및 운영비 】

- 지원내용 : 통역사 6명 인건비, 운영비
  - \* 한국어 교육은 글로벌 마을학당 사업비 활용
- 지원기준 : 『2025년 가족사업안내(여가부)』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 준용
- 통역사 자격기준
  - (대상) 한국 체류 기간 2년 이상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주민 등
  - (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통번역 업무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 『2025년 가족사업안내(여가부)』 종사자 자격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참고자료

1. 다문화주간 어울림 축제 ..... 33
2.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 지원 ..... 34
3. 2025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예산현황 ..... 35
4. 외국인주민 현황 ..... 36



# 1. 다문화주간 어울림 축제

-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어울림 축제를 개최하여 도민 소통의 장 마련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다문화가족간 만남을 통해 다양한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기여

## □ 사업개요

- 일시/장소 : 2025. 5월 (예정) / 임실군 (예정)
- 사업비 : 51,100천원(도비)
- 사업대상 : 1,000여명(다문화가족, 도민 등)
- 사업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어울림 축제 개최
-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
- 주관 :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 □ 행사 주요내용

- 식전행사 및 축하공연
- 기념식 : 기념사, 유공자 시상, 공모전 시상 등
- 문화공연 : 시군별 어울림문화공연 발표회
- 체험행사 : 국가별 음식·문화 체험, 인형극 공연, 다양한 체험 등
- 부대행사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

## □ 추진일정

- 다문화 어울림 축제 개최 계획 수립 : '25. 3월
- 제17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 개최 : '25. 5월

## 2.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언어·문화 등의 차이로 사회적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도내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에게 방송을 제작·방송하여 알 권리 충족 및 한국생활의 안정성 확보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비 : 180,000천원(도비 162,000, 자부담 18,000)
- 방송시간 : 매주 일요일 10:05~10:35(30분)  
※ 전국방송 : 매월 3, 4번째주 일요일 05:00~06:00(60분)
- 시행주체 : 전주문화방송(주)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 □ 사업내용

-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제작·송출(TV), 유튜브 채널 운영 \* 다정다감 : 다문화 정보 다문화 감성의 의미를 담고 있음
- 방송내용(안) 우리 이웃인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의 삶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차별과 편견 없이 바라본 시각

### 3. 2025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부담비율	비고
<b>총 계</b>	20,880	8,549	4,012	8,301	18		
<b>국 비(9개사업)</b>	17,064	8,549	2,608	5,907			
가족센터 운영 지원	12,196	6,098	1,829	4,269		국50/도15/시군35	14시군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232	23	209			국10/도90	광역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70	135	40	95		국50/도15/시군35	14시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190	595	178	417		국50/도15/시군35	14시군
자녀양육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1,802	901	270	631		국50/도15/시군35	14시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000	500	150	350		국50/도15/시군35	14시군
이중언어 학습 지원	958	479	143	336		국50/도15/시군35	14시군
<b>도 비(8개사업)</b>	3,867		1,304	2,545	18		
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	1,622		487	1,135		도30/시군70	14시군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244		73	171		도30/시군70	14시군
가족사업기관 인건비 및 수당	1,224		367	857		도30/시군70	14시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236		71	165		도30/시군70	14시군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70		21	49		도30/시군70	14시군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 지원	180		162		18	도90/자부담10	전주MBC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240		72	168		도30/시군70	전주,익산
다문화주간 어울림 축제	51		51			도100	광역센터

# 4. 외국인주민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자료, 2023.11.1. 기준)

## □ 전북도

- 외국인 주민 수 :73,802명 ※ 전북도 인구 1,768,491명 대비 4.2%

(단위 : 명, %)

구분	외국인 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귀화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023.11.1	73,802	37,135	36,667	52,799	13,505	5,872	9,799	2,781	20,842	7,118	13,885
2022.11.1	65,119	31,822	33,297	44,728	10,705	5,722	9,502	2,680	16,119	6,777	13,614
증감인원 (증감율)	8,683 (13.3)	5,313 (16.7)	3,370 (10.1)	8,071 (18)	2,800 (26.1)	150 (2.6)	297 (3.1)	101 (3.7)	4,723 (29.3)	341 (5)	271 (2)

### ○ 유형별 현황

- 국적 미취득자(52,799명, 71.5%), 국적취득자(7,118명, 9.6%)
- 국내 출생 외국인주민자녀(13,885 , 18.9%)

### ○ 국적별 현황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52,799명으로 '22년 44,728명에 비해 8,071명(18%) 증가 (단위 : 명, %)

베트남	중국 (한국계 포함)	태국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14,164	9,463	8,232	3,096	2,849	1,946	1,752	1,511
26.8%	17.9%	15.6%	5.8%	5.4%	3.7%	3.3%	2.8%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7,118명으로 '22년 6,777명에 비해 341명(5%) 증가 (단위 : 명, %)

베트남	중국 (한국계 포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3,038	2,406	802	380	73	67	41	28
42.7%	33.8%	11.3%	5.3%	1%	0.9%	0.6%	0.4%

- 국적 취득 후 경과 기간

(단위 : 명)

시·도	합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4년미만	4년 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전북	7,118	298	321	357	323	368	1,680	3,771
	구성비	4.2%	4.5%	5.0%	4.5%	5.2%	23.6%	53.0%

###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외국인	49,840	55,940	62,151	60,872	60,684	65,119	73,802
증감	4,004	6,100	6,211	-1,279	-632	4,435	8,683

## □ 전북도 결혼이민자 현황

- 전북 결혼이민자는 12,990명으로 전북인구 0.73% 차지, 전국 결혼이민자 41.4만명의 3.1%에 해당(전국 10위) ※국적 취득자 54.8%(7,118명), 미 취득자 45.2%(5,872명)

###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명)	10,900	11,165	11,595	12,004	12,175	12,499	<b>12,990</b>
여 성	10,165	10,373	10,761	11,104	11,244	11,476	<b>11,886</b>
남 성	735	792	834	900	931	1,023	<b>1,104</b>
증가율	3.1	2.4	3.9	3.5	1.4	324	<b>491</b>

※ 타 시도 결혼이민자 현황: 경기 경기 136,968(1위), 서울 78,324(2위), 전북 10위

### ○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태국	대만	몽골	기타
인원수(명)	<b>12,990</b>	4,972	3,942	1,287	671	616	328	170	135	869
비율(%)	100	38.3%	30.4%	9.9%	5.2%	4.7%	2.5%	1.3%	1.0%	6.7%

### ○ 시군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인원수 (명)	<b>12,990</b>	2,965	2,064	2,132	1,060	725	784	916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82	217	264	285	293	503	500

## □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현황

(단위: 명/ 2023.11.1기준)

구 분	결혼이민자 현황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계	남	여	계	남	여
<b>합 계</b>	<b>414,578</b>	<b>88,618</b>	<b>325,960</b>	<b>308,402</b>	<b>157,348</b>	<b>151,054</b>
서울특별시	78,324	24,064	54,260	39,729	20,134	19,595
부산광역시	14,640	2,348	12,292	13,495	6,835	6,660
대구광역시	11,145	1,589	9,556	10,603	5,332	5,271
인천광역시	33,630	8,940	24,690	20,545	10,512	10,033
광주광역시	7,818	991	6,827	7,736	4,021	3,715
대전광역시	7,300	1,051	6,249	6,973	3,561	3,412
울산광역시	7,194	1,111	6,083	6,466	3,285	3,181
세종특별자치도	1,850	302	1,548	1,782	894	888
경기도	136,968	34,393	102,575	85,106	43,277	41,829
강원도	9,008	936	8,072	8,971	4,573	4,398
충청북도	13,045	1,810	11,235	11,751	6,006	5,745
충청남도	20,965	3,097	17,868	18,134	9,254	8,880
<b>전라북도</b>	<b>12,990</b>	<b>1,104</b>	<b>11,886</b>	<b>14,255</b>	<b>7,394</b>	<b>6,861</b>
전주시	2,965	295	2,670	3,119	1,664	1,455
군산시	2,064	221	1,843	1,909	985	924
익산시	2,132	222	1,910	2,180	1,108	1,072
정읍시	1,060	96	964	1,173	610	563
남원시	725	42	683	852	434	418
김제시	784	62	722	909	461	448
완주군	916	69	847	1,104	548	556
진안군	282	15	267	371	188	183
무주군	217	4	213	297	145	152
장수군	264	8	256	346	189	157
임실군	285	14	271	401	216	185
순창군	293	7	286	384	196	188
고창군	503	18	485	662	363	299
부안군	500	31	469	548	287	261
전라남도	14,229	1,026	13,203	17,017	8,774	8,243
경상북도	17,304	1,847	15,457	18,114	9,269	8,845
경상남도	22,373	2,973	19,400	22,172	11,435	10,737
제주특별자치도	5,795	1,036	4,759	5,553	2,792	2,761

##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자녀 현황

○ 최근 학령기 자녀 증가 취학전 아동 4,240명 29.7% 초등학생 5,357명 37.6%

○ 연도별

(단위: 명, %/ 2023.11.1기준)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256	11,864	12,906	13,336	13,699	13,993	<b>14,255</b>
귀화 및 외국국적	263	282	310	331	334	379	<b>370</b>
국내 출생	10,993	11,582	12,596	13,005	13,365	13,614	<b>13,885</b>
증가인원	1,505	608	1,042	430	363	294	<b>262</b>
증가율(%)	15.4	5.4	8.8	3.3	2.7	2.1	<b>1.9</b>

○ 연령별

(단위: 명, %/ 2023.11.1기준)

구 분	계	6세 미만	7~12세	13~15세	16~18세
인원수(명)	<b>14,255</b>	4,240	5,357	2,837	1,821
비 율(%)	100	29.7	37.6	19.9	12.8

※ 만6세 이하가 29.7%, 7~18세는 70.3%로 학령기 자녀 대다수 차지

○ 시군별

(단위: 명, %/ 2023.11.1기준)

구 분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인원수 (명)	<b>14,255</b>	3,119	1,909	2,180	1,173	852	909	1,104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371	297	346	401	384	662	548

○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초·중·고)

(교육통계서비스, 2024.4.1.기준)

연도	전체학생수 (초·중·고)	국제결혼가정 자녀(A)		외국인가정 자녀(B)		계(A+B)		전년대비 증가율 증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7	217,835	5,947	2.73	109	0.05	6,056	2.78	0.31
2018	211,967	6,555	3.09	163	0.07	6,718	3.17	0.39
2019	203,148	7,066	3.49	164	0.08	7,230	3.56	0.39
2020	196,364	7,512	3.83	208	0.11	7,720	3.93	0.37
2021	192,793	7,831	4.07	274	0.14	8,105	4.20	0.27
2022	188,639	7,924	4.20	304	0.16	8,228	4.36	0.16
2023	183,616	8,320	4.53	344	0.18	8,664	4.72	0.36
<b>2024</b>	178,795	8,541	4.77	469	0.26	<b>9,010</b>	5.04	0.32



동 사업지침은 최종 확정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